

1. 개정이유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6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하여야 하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취소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지정취소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 나.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 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를 정비함(안 제8조)
- 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취소 절차를 정비함(안 제14조)
- 마.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호와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4호의 “지정심사와”를 “지정심사 및 지정심사 계획수립과”로 하고, 제6호 중 “정기점검 및”을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 계획수립과”로 하며, 같은 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6.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

제8조제1항 중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로 한다.

제9조제1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위원그룹을 운영하여야 한다.”를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하고, 제3항의 “지정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을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과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정위원회의 업무) 지정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제4조(지정위원회의 업무)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심사 대 행기관의 지정취소	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제4항에 따른 우수녹색물 류실천기업 지정취소의 결정	6. <삭 제>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업무) 지정심사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정심사대행기관의 업무)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에 따른 지정심사와 지 정심사 결과의 보고	4. ----- 지정심사 및 지 정심사 계획수립과 -----
5. (생 략) <신 설>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 기점검 결과의 보고	6. 제13조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처리
7. (생 략)	7. 제15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 기점검 계획수립과 -----
8. 삭제	8. (현행과 같음) <삭 제>

9. ~ 10. (생 략)

제8조(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심사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9조(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운영) ①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지정제도의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위원그룹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위원그룹은 별표 2의 평가항목별로 10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지정심사 등) ①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절차-----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정심사위원그룹 및 지정심사단 구성·운영) ① -----

----- 사람으로
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위원그룹을 구성하여야 한다.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심사 등) ① (현행과

② 2차 심사는 제1항에 따른 1차 심사 집계 결과 시행규칙 제14조의7제1항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2할 이상을 취득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시행한다. 이 경우 지정심사단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신청인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정심사단은 지정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정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제14조(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지정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지정심사 대행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30일 이내

같음)

② -----

현장조사-----

-----.

③ -----
----- 지정심사대
행기관의 장-----
-----.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정취소 통보 등) ① 법 제60조의6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u>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u> <u>④ 지정심사 대행기관의 장은 지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 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국토교 통부와 해당 지정업체에 서면으 로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한다.</u>	<u>④ 지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20일 이내 지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u> <u>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지정심사대 행기관의 장과 처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u>
---	---